

개인지방소득세 신고

이렇게
좋아집니다



1 홈택스에서 한번에

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,
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 채워 제공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
→ 소득세 신고완료

→ “지방소득세 신고” 버튼 클릭



2 신고장소 확대(5월)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·군·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,
신고자가 세무서와 시·군·구청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(국세)와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) 한 번에 신고 가능



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(신고 없이도 납부서 발송)

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·군·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

*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(4))

업종별	직전년도 수입금액
1. 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	6천만원 미만
2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,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, 운수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3천6백만원 미만
3.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임대업(부동산임대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	2천4백만원 미만

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(양도소득세)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,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·군·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

* 세무서 양도소득세(국세) 신고 시 양도소득분(지방세) 동시 신고납부 가능

4 신고접수함 설치

신고(기한후·수정신고 포함),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·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

소득세(국세) 신고서 작성 →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→ 수기납부서(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§40서식) 작성 →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→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

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

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

※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

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

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,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 부담 최소화

※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 받아 활용

7 신고가산세 면제

종합·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(2년간)